

이사회규정

제정	: 2001.06.27	7차 개정	: 2012.05.08
1차 개정	: 2004.04.21	8차 개정	: 2015.08.11
2차 개정	: 2007.02.13	9차 개정	: 2019.03.11
3차 개정	: 2009.11.02	10차 개정	: 2019.03.27
4차 개정	: 2010.03.23	11차 개정	: 2020.08.06
5차 개정	: 2010.05.27	12차 개정	: 2021.04.30
6차 개정	: 2012.03.30	13차 개정	: 2023.08.0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이사회 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본 규정 제7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.
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이사회는 사내이사,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한다.
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④ 이사회 주관부서는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의장)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②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중에서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소집)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의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제5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의 1일전까지 개최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포함한 통지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동기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단축, 또는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이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의2(긴급이사회)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,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부의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
2. 지점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3.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
4. 정관의 변경
5. 자본의 감소
6. 회사의 해산, 합병
7.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
8. 이사의 선임 및 해임
9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10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11.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11의 2. 주식배당 결정
12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13. 준비금의 자본전입, 이익금의 처분
14. 신주발행의 결정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
15.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
16. 내부거래 등의 승인
17.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및 발행조건의 결정
18. 예산의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
19. 이사의 경업, 겸임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
20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21.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21의2. (삭제)
22. 연간 사업계획의 채택 및 수정
23.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폐지
- 23의2. 이사회내 위원의 선임 및 해임
24.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
25. 국내외 자회사 설립 및 타법인 출자, 지분매각
- 25의2. 보증 및 담보제공

26. 경영관리에 필수적인 이사회관련, 인사, 직제, 보수, 퇴직금, 내부 회계 규정, 준법통제기준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26의2. 경영임원의 이동이 있는 조직의 설치, 변경 및 폐지 등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
- 26의3.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 및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
27.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의 차입
- 27의2. 자기자본 5%이상의 단기차입금의 차입
28. 중요 자산(10억원 이상)의 취득, 처분 및 양도
29. 자본금 1%이상에 해당하는 책임의 인수
30.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
31.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
32. 1,000만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
33. 5,000만원 이상의 채무면제
34.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단위 사업별 위탁업무 수수료 지급액이 연간50억원 이상인 계약체결, 변경 또는 해약
35. 이사·감사위원 및 경영임원 법무 지원제도 도입 및 변경
36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, 주총 위임 사항,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(삭제)
 2. 분기 차입금 현황
 3. 분기 자금운용 현황
 - 3의2. 원금보장상품 비율이 50% 미만인 금융상품 투자 시(건당 10억원 이상)
 4. (삭제)
 5. 매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
 6.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 보고
 7. (삭제)
 - 7의2. 분기 계약체결 현황(년 1억원 이상)
 - 7의3. 분기 법적 분쟁 현황(0.5억원 이상)
 8.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보고
 9.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(년 2회)
 10.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8조(의사 및 결의)** ① 이사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②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③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의사록)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사회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사외이사 지원 등) ① 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제12조(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. ②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, 각 위원회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(제 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6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4. 2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2. 13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6조(소집)에 관한 시행일은 200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국인포서비스 정관 제6장(이사회) 개정 결의 후 적용한다.

부 칙(2009. 11. 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3. 23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27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3. 30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5. 8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8. 1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3. 1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3. 27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8. 6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4. 30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8. 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.